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6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6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1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11.
- (3) 회 부 일 : 2024. 6.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 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배우자나 친족, 대리인 등이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환자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요청을 받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① 환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자의 배우자나 친족, 대리인 등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배우자나 친족, 대리인 등이 제1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요청·제공할 수 있는 대상 정보는 표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본인이 아닌 요청자의 열람 및 내용 확인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본인이 아닌 요청자의 열람 및 내용 확인 지

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u>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u> <u>· 관리적 조치를 할 것</u> <u>2.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운</u> <u>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u> <u>아니할 것</u> <u>3.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이</u> <u>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u> <u>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u> <u>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u> <u>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 열람지</u> <u>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u> <u>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⑬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u> <u>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u> <u>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u> <u>보호법」에 따른다.</u>
시행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제1항¹⁾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²⁾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부터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³⁾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조회되는 의료기관의 정보에는 환자정보, 진단내역, 병리검사, 수술내역, 알레르기 및 부작용, 진료의 정보, 내원정보,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이 있음.⁴⁾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법 시행령」 (2023.3.5. 시행)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2.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3. 그 밖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지원 등에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건보공단·심평원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중계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음.

4) p.14 참고자료 1 참조.

< 건강정보 고속도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조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의료법 시행령의 내용 비교 >

구분	의료법 시행령(제10조의3)	개정안(제21조의3)
제공 대상	· 환자 본인(법 제21조제1항)	· 환자 본인(법 제21조제1항) · 환자의 보호자 등(법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스템 연계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법 제21조의2제3항) · 진료기록보관시스템(법 제40조의3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⁵⁾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법 제21조의2제3항) ·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계 기관 협조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개인정보	-	·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에 관한 업

구분	의료법 시행령(제10조의3)	개정안(제21조의3)
처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⁶⁾
업무 위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⁷⁾	·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21조의3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공유·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환자의 진료기록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점을 고려하여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⁸⁾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2호, 제2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6)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확인 또는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보유한 관계 기관에 직접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증빙서류 발급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2호, 제3조(업무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2.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8)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 둘째, 안 제21조의3제6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이 아닌 요청자의 열람 및 내용 확인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친족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제공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행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⁹⁾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6.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8.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9)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21조의3제2항은 환자 또는 환자의 배우자나 친족, 대리인 등 (보호자)이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그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 문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 (수정)

- 국민의 본인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관련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사항이나 국가 주도로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한 법적 안정성 등 확보를 위해 상위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인 확인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제3자 전송의 법적 근거가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된 점,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활용 등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법률안 병합심사 등 보건의료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통합적 대안 논의가 필요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수정)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친족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제공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 절차(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및 요청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벌칙 규정도 동법에서 마련하고 있으므로 동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음.

3) 대한의사협회 의견 (수정)

□ 진료기록은 단순히 환자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의 생산자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판단과 해석이 포함되며 책임 역시 발생하므로 생산 자료에 대한 권리를 간과할 수 없고, 지역화·개별화된 자료를 강제로 표준화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오인 및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추가 이익에 비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보임.

- 복제·전송 등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에 있어 구체적인 사본 발급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록의 열람 및 내용의 확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정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은 환자의 편의가 아닌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지원 기능을 두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전송지원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 등에게 수많은 환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등 단순한 진료기록 열람의 범주에서 동 법안을 판단하기 어려움.

4)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한 의사협회 의견 (수정)

□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는 등가하여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료데이터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본의 발급 부분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부가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등의 법리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생산한 의료데이터는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데이터자산이므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 경제적 이익이 침해 받아서는 안 됨.

□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이 아니라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단체 중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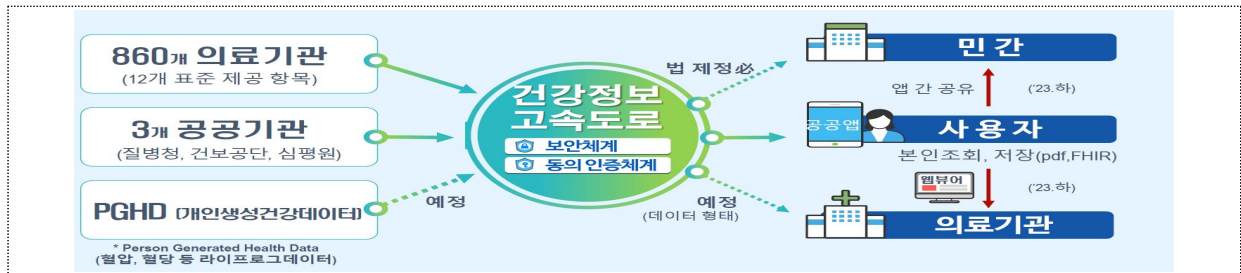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공받아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12

[참고자료 1.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고자료 10)]

- (플랫폼 정식 가동) 연계된 제공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조회하고, 원하는 곳(본인동의 기반)으로 전송하는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 구축
<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 >



- (제공 데이터) 공공기관 보유 정보(본인 既제공) + 의료기관 보유 정보

- (공공기관)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보유 의료데이터*
* 건보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심평원(투약이력), 질병청(예방접종이력)
- (의료기관) 연계된 의료기관*의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FHIR 방식)
* (현재) 860개소(상종 9, 중병 13, 병원 838) ⇒ ('24년) 누적 1,003개소(상종 26, 중병 24, 병원 953) 연계 ⇒ ('25년) 상종 47개소 전체 연계

① 환자정보	④ 진단내역	⑦ 영상검사	⑩ 수술내역
② 의료기관정보	⑤ 약물처방내역	⑧ 병리검사	⑪ 알리지 및 부작용
③ 진료의정보	⑥ 진단검사	⑨ 기타검사	⑫ 진료기록

※ 영상검사의 경우 현재 검사일시·검사조건 등만 확인가능 하나, 향후 제공 내용 확대 계획

- (나의건강기록 앱) “나의건강기록 앱” 활용으로 모든 건강정보 통합 제공

- (본인 확인)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조회·저장·공유
- (의료진 활용) 본인 공유 통해, 쏘 의료기관에서 뷰어 형태로 의료정보 확인

< 나의건강기록앱 의료정보 제공 화면 >

